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기관의장

람

제1661호 2022. 3. 16.(수)

차 례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65호 도시관리계획(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
열람·공고 _____ 1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-465호

도시관리계획(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 열람 · 공고

도시관리계획(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· 공고합니다.

2022. 3. 16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I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
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-	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서구 원당동 · 당하동 일원	948,480.9	-	948,480.9	인고 제1999-18호 (1999. 02. 23)	

2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
가.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구 분	면 적(㎡)			구 성 비(%)	비 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948,480.9	-	948,480.9	100.0	
주거지역	859,759.8	-	859,759.8	90.0	
제1종일반주거지역	286,607.6	-	286,607.6	30.0	
제2종일반주거지역	189,904.7	-	189,904.7	20.0	
제3종일반주거지역	383,247.5	-	383,247.5	40.0	
일반상업지역	88,721.1	-	88,721.1	10.0	

나.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3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
가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
■ 공동주택용지(D-1)(변경)

기 정					변 경						
도면 표시	가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고	도면 표시	가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				위치	면적(㎡)	
D-1	53-1	33,415.2	1	520.6	D-1	53-1	33,415.2	1	28,739.0		
			2	570.9							
			3	200.2							
			4-1	4,009.6							
			4-2	5,540.6							
			5	3,212.2							
			6	2,643.8							
			7	778.4							
			8	1,084.5							
			9	10,178.2							
			10	4,676.2			2	4,676.2			

■ 변경 사유서

가구번호	위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53-1	1, 2, 3, 4-1, 4-2, 5, 6, 7, 8, 9, 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획지합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, 2, 3, 4-1, 4-2, 5, 6, 7, 8, 9 ⇒ 1 (10개획지→1개획지) ○ 획지번호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 ⇒ 2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획지 합병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

나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■ 공동주택용지(D-1)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	
D-1	53-1, 69-1, 70, 93-1, 94, 101, 102BL	용도	허용용도	○ 별표1의 D-1의 허용용도
			불허용도	○ 별표1의 D-1의 불허용도
		건 폐 율	○ 30%이하	
		용 적 률	○ 250%이하	
		높 이	○ 20층 이하	
		배 치	○ 별표2의 D	
		형 태	○ 별표3의 D	
		색 채	○ 별표4의 D	
		건 축 한 계 선	○ 12~17m 도로변: 건축한계선 1.0m ○ 20m 도로변: 건축한계선 1.5m	

다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II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1. 열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2. 의견제출: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III. 열람장소

-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, 서구청), 도시계획과(032-560-6873)

IV. 관계도서: 게재 생략(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)

의견서

일시	2022. . .
성명	
주소	※ 회신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
연락처	※ 회신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
도시계획 변경사항	도시관리계획(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
의견사항	
※ 의견사항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.	